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8월 7일, 김위상의원 등 11인

나. 회 부 일 자: 2025년 8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5. 11.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 상정, 축조
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4. 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위상의원)

최근 기후변화로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등 ‘대발생 곤충’의 출현이 잦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대발생 곤충을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땅치 않아 대발생 곤충이 출현할 때마다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 및 피해 규모를 조사·관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최근 지구온난화와 도시환경 변화로 수도권 등에서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동양하루살이 등 곤충이 대량으로 발생해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

다만, 2025년 현재 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도적으로 관리되는 대벌레 등 일부 곤충을 제외하고는, 현행법상 이른바 ‘대발생 곤충’에 대한 정의 및 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대발생 곤충’의 정의 규정과 방제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급증하고 있는 대발생 곤충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타법에서 질병 등 건강상의 피해 유발로 관리 중인 곤충의 경우 중복 관리로 인한 예산·행정상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2조제12호의 대발생곤충 정의 중 ‘국민 건강’ 피해 부분에 대한 삭제가 필요하고,

대발생곤충은 조사, 감시, 방제 등 관리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정되므로, 안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별도의 방제·관리 대상을 지정할 필요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경기도는 대발생 곤충 방제를 위해 별도 인력을 상비하는 것은 지자체 현실상 불가능하므로, 해당 업무를 해충 방제 예산 및 숙련된 인력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보건소가 담당할 수 있도록 기후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의 공동대응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해당 의견에 대해 기후부는 개정안의 대발생 곤충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관리 중인 곤충은 관리 목적이 상이하어 대발생 관리업무를 질병청 소관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방제 인력 및 예산을 기 구비하고 있는 보건소 등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명시할 필요는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 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타사항

없 음